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296회 임시회

# 심사보고서



2023. 4.

경제도시위원회

# 목 차

1.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	1
2.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
3.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5
4. 본리덕인(달서구17)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	8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3. 4. 20.

경기도시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- 발의자: 박왕규 의원 등 7명(김장관, 서보영, 임미연, 도하석, 강한곤, 고명옥)
- 발의일자: 2023. 4. 7.
- 회부일자: 2023. 4. 7.
- 상정 및 의결: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(2023. 4. 20.)

### 2. 제정이유

- 달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공헌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~안 제3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~안 제6조)
- 긴급안전조치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~안 제8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제66조의11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3조의9
- 예산조치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3. 4. 7. ~ 4. 17.): 의견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공연, 축제 등 각종 옥외행사 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.
- 최근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밀집된 좁은 공간에서의 행사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의 사전 대비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한 시기에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임.
- 특히 본 조례의 제정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“지방자치 단체의 책무”를 충실히 이행 하는 것이고, 관련법에서 정한 1,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 참석 행사가 아닌 500명 이상 1,000명 미만의 소규모 옥외행사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전점검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관련법령의 사각지대 보완을 통한 옥외행사의 안전한 개최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구민의 생명 및 신체·재산 보호와 문화·예술·체육 분야의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